

14. 볼리비아(Bolivi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의무개인계좌 보험료율	(근로, 자영자) 12.21% (사용자) 장애유족연금 보험료만 납부	(근로, 자영자) 12.21% (사용자) 장애유족연금 보험료만 납부	-
의무개인계좌 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120,000 / 2,000 bolivianos	127,320 / 2,122 bolivianos	상한 7,320 ↑ 하한 122 ↑
수급 개시 연령	(보편연금) 60세 (의무개인 연대연금) 58세	(보편연금) 60세 (의무개인계좌) 58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(의무개인 연대연금) 10년	(의무개인 연대연금) 10년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49년(사회보험)
- **현행법** : 1956년(사회보장, 1959년 시행), 2007년(보편연금, 2008년 시행), 2010년(통합사회보험), 2011년(사회보장규정), 2012년(장애인), 2013년(장애연대보조금), 2013년(보편 및 연대연금 증액)

2 제도형태

- **보편 및 의무개인계좌 제도**
 - 1997년, 구 사회보험제도 하의 모든 가입자는 의무개인계좌제도로 전환됨

3 적용대상

- **보편제도** : 볼리비아 거주 시민
 - 적용제외 : 공공부문 근로자(장애연대수당)
- **의무개인계좌** : 봉급근로자(군인 및 견습생 포함)
 - 임의적용 : 자영자

○ 가입자

- 보편연금 : 없음
 - 의무개인계좌 : 노령연금을 위해 적용소득의 10%. 장애 및 유족연금을 위해 1.71%, 관리 운영비를 위해 0.5%
 - 연대연금
 - 월 신고소득의 0.5% : 2,122 bolivianos ~ 13,000 bolivianos
 - 월 신고소득의 1% : 13,001 bolivianos ~ 25,000 bolivianos
 - 월 신고소득의 5% : 25,001 bolivianos ~ 35,000 bolivianos
 - 월 신고소득의 10% : 35,000 bolivianos 초과
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소득 하한액 : 법정 월 최저임금
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소득 상한액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배
 - 법정 최저임금은 : 2,122 bolivianos
- ※ 장애 및 유족보험을 위한 가입자 보험료의 20%는 연대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됨

○ 자영자

- 보편연금 : 없음
 - 의무개인계좌 : 노령연금을 위해 적용신고소득의 10%. 장애 및 유족연금을 위해 1.71%, 행정관리운영비를 위해 0.5%
 - 연대연금
 - 월 신고소득의 0.5% : 2,122 bolivianos ~ 13,000 bolivianos
 - 월 신고소득의 1% : 13,001 bolivianos ~ 25,000 bolivianos
 - 월 신고소득의 5% : 25,001 bolivianos ~ 35,000 bolivianos
 - 월 신고소득의 10% : 35,000 bolivianos 초과
 - 광산협동조합의 자영자는 월 신고 영업소득의 2%를 연대연금을 위해 추가 납부
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신고소득 하한액 : 법정 월 최저임금
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신고소득 상한액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배
 - 법정 최저임금 : 2,122 bolivianos
- ※ 장애 및 유족보험을 위한 자영자 보험료의 20%는 연대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됨

○ 사용자

- 보편연금 : 없음
- 의무개인계좌 : 노령급여에 대한 보험료 없음
 - 장애 및 유족급여에 대한 보험료 납부
 - 연대연금 : 적용임금의 3%; 광산협동조합의 경우(판매로 발생한 적용임금의 2%)

○ 정부

- 보편연금 : 국영기업의 배당금 및 탄소세를 통해 보편노령연금, 보편장제비, 장애연대수당의 총비용을 지원
- 의무개인계좌 :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발생한 임금액 납부
 - 연대연금 : 없음
 - 사용주로서 납부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보편노령연금(Renta Dignidad)

- 60세 도달
 - 보편노령연금은 특정 조건하에 한시적으로 해외 지급 가능

○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

- 개인계좌 적립액이 최종 2년(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전체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 적용소득의 60%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할 수 있고, 장제비 및 가입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우, 어느 연령에서도 지급 가능
- 구 사회보험제도에서 발생한 수급권이 있고 남 55세, 여 50세 도달자로 개인계좌 적립액이 직전 2년(가입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전체 가입기간)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60%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할 수 있고, 장제비용 및 가입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우
- 10년의 가입기간과 58세 도달(광부의 경우 56세), 개인계좌 적립액이 연대연금보다 많은 월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
- 여성의 퇴직연령은 출산 1건당 1년씩 낮아짐 (최대 3년까지), 광부 및 유해환경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감소(2년 근무 시 1년 인정)
- 연대연금
 - 10년의 가입기간과 58세 도달(광부의 경우 56세), 그리고 개인계좌 적립액이 법정 월 최소 기준연금을 지급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 지급
 - 여성의 퇴직연령은 출산 1건당 1년씩 낮아져 최대 3년까지, 광부 및 유해환경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(2년 근무 시 1년 인정)
- 노령연금은 특정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해외 지급가능

○ 장애연금(의무개인계좌)

- 65세 미만으로 장애정도를 60% 이상으로 판정받고,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제도에 최소 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, 개인계좌제도에 첫 번째 보험료 납부일과 장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1/2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로,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이거나 장애발생 이전에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한 경우 지급
- 장애의 원인이 질병이라면 가입자는 장애발생 이전 최종 36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

최소 18개월 이상이어야 함

- 부분장애연금 : 65세 미만으로 장애정도를 50%~59%로 판정받은 자로 완전장애연금의 연령과 수급요건에 부합해야함
- 중증장애보충수당 : 최소 80% 이상의 장애정도를 판정 받은 자
- 공인된 의사가 장애등급판정
- 장애연금은 65세에 정지되고 개인계좌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장애연금은 특정 조건하에 한시적으로 해외 지급 가능

○ 장애연대수당(보편제도)

-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로 판정되거나, 일상적 업무 수행 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장애인 경우
 - 시각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연대수당 지급되지 않음

○ 유족연금(의무개인계좌)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자격이 있어야 하며, 최소 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사회보험이나 의무개인계좌제도에 있거나, 의무개인계좌제도 첫 번째 보험료 납부일과 사망일까지의 기간동안 1/2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가, 사망일까지 보험료 납부 중이거나 사망 전에 보험료 납부중단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
- 사망원인이 질병이라면 사망자는 사망 전에 최종 36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함
- 유족연금 수급권자 : 배우자, 동거하는 파트너, 18세 미만(학생일 경우 25세 미만, 장애의 경우 제한 없음) 자녀. 배우자, 파트너, 자녀가 없는 경우, 사망자의 부모, 18세 미만의 형제자매, 가입자가 지정한 기타 유족이 수급
- 유족 배우자 및 파트너의 유족연금은 재혼이나 동거 시 지급 정지
- 유족연금은 특정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해외 지급 가능

○ 장제비(보편제도)

- 60세 미만 혹은 60세의 개인계좌 노령연금, 장애연금 또는 연대연금 수령자 사망 시 지급
- 수급권자 : 배우자, 동거하는 파트너, 형제자매 혹은 사망자의 부모가
- 사망일 이후 18개월까지 청구 가능
- 보편제도 장제비는 개인계좌장제비와 동시에 지급될 수 없음

○ 장제비(의무개인계좌) : 60세 미만 가입 근로자 또는 60세 이상 시민 사망 시 지급

- 개인계좌장제비는 보편제도 장제비와 동시에 지급될 수 없음

○ 노령급여

- 보편노령연금
 - 연간 4,550 bolivianos를 평생 지급(다른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3,900 bolivianos)
 - 급여는 월, 격월, 분기, 연 단위로 지급
 - 급여조정 : 유효 기금에 기초하여 3년마다 급여액 조정함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가입자는 반드시 퇴직 시점에 계좌잔액을 사용하여 확정형 또는 변동형 연금을 취득해야 함(퇴직 시 구사회보험제도 하에 발생한 연금은 개인계좌의 잔액과 합산됨)
 - 변동형 연금으로 지급받는 첫 번째 월 연금액은 최종 2년(가입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전체 가입기간) 동안의 가입자의 평균 적용소득의 60% 이상이어야 함
 - 급여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일 조정되는 UFV(Unidad de Fomento de Vivienda)에 따라 매년 조정
- 연대연금 : 개인계좌의 잔액과 가입자의 납부 연수에 상응하는 법정 기준금액의 차이 지급
 - 10년~15년 : 10년 (640 bolivianos), 11년(695 bolivianos), 12년(752 bolivianos), 13년 (804 bolivianos), 14년(864 bolivianos), 15년(920 bolivianos)
 - 16년 이상 : 법정 월 최소 기준연금은 가입자의 납부 기간과 최종 24개월 동안의 평균적용소득에 따라 변동됨; 16년 이상 가입자의 월 지급액은 954 bolivianos~1,136 bolivianos(가입자의 평균적용소득에 따라 변동)
 - 35년 이상 : 1,600 bolivianos~ 4,200 bolivianos 사이에서 급여는 매년 순차 증액
 - 연금 지급 주기 : 연 13회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최종 5년간(가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전체 가입기간) 가입자 평균소득의 70% 지급
 - 부분연금 : 판정된 장애정도에 최종 5년간(가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는 전체 가입기간) 가입자 평균소득을 곱하여 산정
 - 중증장애보충수당 : 월 급여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과 동일
 - * 법정 월 최저임금 : 2,122 bolivianos
 - 보험회사는 최종 5년간(가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전체 가입기간)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10%를 매월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망 시까지 가입자의 개인계좌로 지급
 - 장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과 동일
 - 장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최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배
 - 연금 지급 주기 : 연 13회
 - 장애 판정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가입자는 (적용 가능한 경우) 구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수급권에 개인계좌 잔액을 더한 것을 일시적인 연금 취득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. 월 연금은 최종 5년간(가입기간이 5년

미만일 경우 전체 가입기간) 가입자 평균소득의 60%임.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%

- 급여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일 조정되는 UFV(Unidad de Fomento de Vivienda)에 따라 매년 조정

- 장애연대수당(보편제도) : 월 250 bolivianos 지급

○ 유족급여(의무개인계좌)

- 유족배우자연금

- 수급자격이 없는 자녀와 함께 있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월 기본 유족연금액의 90% 지급;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가 한명 있으면 기본 유족연금액의 70%; 수급자격 자녀 2명 이상은 50%(사망자의 개인계좌 잔액과 적용 가능한 구사회보험제도 발생 급여의 합이 최저 유족연금액의 재원에 불충분한 경우, 생명보험에서 사망자의 개인계좌 적립액에 부족분을 보충함)

- 월 기본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수급하였거나 수급권이 있던 노령(의무개인계좌 또는 연대연금) 또는 장애연금 중 큰 금액 지급, 사망자의 사망 당시 연령에 따라 변동

- 월 기본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과 동일

- 월 기본유족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최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배

* 법정 월 최저임금 : 2,122 bolivianos

- 고아연금

- 고아가 한 명인 경우 월 기본유족연금액의 20%; 고아가 2명 이상인 경우 50%를 균분 지급; 완전고아의 경우 100%를 균분(사망자의 개인계좌 잔액과 (적용 가능한 경우) 구 사회보험제도 발생 급여의 합이 최저 유족연금액의 재원에 불충분한 경우, 생명보험에서 사망자의 개인계좌 적립액에 부족분을 보충함)

- 고아연금 수급자격이 중단되었을 때는 유족배우자 연금은 재산정됨

- 배우자 및 고아연금 합산액은 월 기본유족연금액의 100%를 초과하지 못함

- 기타 수급 가능 유족

- 수급 가능한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월 기본유족연금의 60%을 기타 수급 가능한 유족에게 균분 지급

- 연금 지급 주기 : 연 13회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(적용 가능한) 구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수급권에 개인계좌 잔액을 더한 금액 활용 가능. 월 연금은 최종 5년간(가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전체 가입기간)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60%임.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% 임

- 급여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일 조정되는 UFV(Unidad de Fomento de Vivienda)에 따라 매년 조정

○ 장제비(보편제도) : 장례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1,800 bolivianos 지급

○ 장제비(의무개인계좌) : 장례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1,800 bolivianos 지급

※ 노령, 장애, 유족연금의 운영은 경제공공재정부 산하 장기사회보장운영공단(The Public Management Body for Long-Term Social Security)으로 이관. 장기사회보장운영공단은 장애연금 운영을 공적보험기관(Public Insurance Entity)으로 이관

○ **경제공공재정부(Ministry of the Economy and Public Finances)**

- <http://www.economiayfinanzas.gob.bo>
- 전반적 관리감독

○ **승인된 금융기관(Approved financial entities)**

- 보편노령연금지급(Renta Dignidad)

○ **보건부(Ministry of Health)**

- <http://www.minsalud.gob.bo>
- 장애연대수당 관리

○ **연금.보험 감사국(Pension and Insurance Auditing Authority ; APS)**

- <http://www.ap.gov.bo>
- 연기금운영국(AFPs)을 감독

○ **연기금운영국(Pensions Fund Administrators ; AFPs)**

- 노령연금, 연대연금, 장제비 운영
- 장애 및 유족보험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

○ **보험회사(Insurance companies)**

- 장애 및 유족연금 지급

○ **평가회사(Assessment Body)**

- AFPs와 보험회사에 의해 설립
- 장애등급 결정